

2022 세계한국어한마당 국제학술대회 [INK-KLACES 분과 / 발표2]

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과제 : 표준화와 현지화의 문제

오지혜(세명대학교)



1. 세계화 VS 현지화

- ullet 한국 언어문화의 위상 \colon 세계화 V_{S} 현지화
- 정치, 경제, 문화 교류로 인함. 동력(動力) 또는 동인(動因)
- o '세계화'(민현식, 2005:99)
-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(수용하는 것). 또는 그렇게 되게 함.(표준국어대사전)
- 한국어를 온 세계 국민에게 알리고 '보급'하는 것.
- ▶ <u>한국어의 '세계화'</u> 는

한국어를 세계인들이 알고 배우기 쉽게 한다는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음.

- '세계화' = '국제화'



1. 세계와 VS 현지화

- 한국어(언어문화) 세계화
- 특정 언어의 세계화는 그 언어 사용 민족이 자신의 민족어를 강력하게 경제, 산업, 문화의 도구로 성공을 거두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.

(민현식, 2005:90)

- ⇒ '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 세계화'
- ▶ 타(외국) 언어문화로서가 아닌 세계 언어문화로서 한국 언어문화



1. 세계와 VS 현지화

- 세계화 단계(민현식, 2005:99-100)
- 개별어 단계/개별 한국어 단계: 국력의 성장 발전과 교류 증가
- 변이어(변종어) 단계: 제국주의 희생으로서 변이어 출현
- 외국어 교육어(교류어) 단계: 국제 간 교류, 외국이 및 이중언어로서 한국어
- 국제 외국어 획득 단계: 외교어로서 지위 획득
- 세계(또는 지역) 공용어 단계: 표준 한국어의 권역별 또는 세계 공용어화

언어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V_S 언어의 현지화와 상호문화주의



2. 교육과정

- 교육 환경의 변화
- 세계화의 시대: 대학 교육, 한글학교 교육
 - → 현지화의 시대: 초중고등학교 교육, 세종학당 교육
- 해외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또는 제3외국어로 채택하거나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증가
- 대상 학습자, 학습 동기 및 목적의 변화
- ※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연황(2020.12. 기준) 2018년 28개국 1,495교 → 2019년 30개국 1,635교 → 2020년 39개국 1,669교
- $rac{1}{2}$ 제 $_1$ 외국어, 제 $_2$ 외국어 채택 연황 제 $_1$ 외국어: 베트남 등 / 제 $_2$ 외국어: 태국, 터키, 필리핀, 프랑스, 러시아, 인도 등



2. 교육과정

- 교육 환경의 변화
- 교육과정의 성격
- 표준화(통일, 규범) $V_{\rm S}$ 범용화(참조)(김은경, 정호선, 유승원, 2022:69) ightarrow 연지화
-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과 현지화 시대의 교육과정
- 세계화 시대
- 비정규교육과정(문화체육관광부, 외교부; 세종학당, 한글학교)
- _ 표준 교육과정 및 표준화 교재
- 예)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 연구 개발(2009), 해외 초.중등학교 한국어 표준교육과 정(2010),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' (2010, 2016, 2017)
- 예) 범용 고재: 세종학당재단 <세종한국어> 등
- 여지화 시대
- 현지 학교 중심의 정교 교육과정(교육부; 초중교등학교)
- _ 현지 교육과정 및 현지화 교재
- 예) 세종학당재단 <세종학당 특성화 사업>



- 교재 개발의 변화
- 세계화 시대: 범용 교재(재외동포아동 대상 교재, 세종학당 교재 등)
- → 현지화 시대: 현지화 교재(지역 및 언어권별, 학습자 모국어권별 교재)
- 연지화 교재 개발의 요구 증대
- 현지 해외 초·중등학교에서는 한국 내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범용 교재나 해외 성인 학습자 대상 교재 또는 재외동포 학습자 대상 교재 사용 (김은경, 정호선, 유승원, 2022:67)
- ▶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요구



- 현지화 교재 요건
- 현지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: 외국어교육정책 및 교과서 심의기준, 교육과정 면제(이미향·유은미, 2022:28)
- 학습자 요인 및 요구: 연령(인지적, 심리 정서적 발달), 목적, 학습 수준
- 교수-학습 상황(학년 $V_{
 m S}$ 숙달도)
- 교사 요인 반영

대조언어학적 접근, 비교문화적 접근, 현지어 번역, 소재 및 맥락, 사진/삽화, 대화, 어휘 등에 있어서 현지화 및 실제성



- 현지 교과서 개발
- 현지 교육자료 및 교구 필요(본책, 익힘책, 보조자료 및 교구)
- 국내와 연지 집필진 공동 참여 및 역할
- 현지 교육부와 현지 한국교육원(KEC)의 한국어 교과서 예) 태국 교육부-태국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과서 발간(2018)
- 현지어본 한국어 교재 사용 예) 이화 한국어, 맞춤 한국어, 서울대 한국어, 서강 한국어 등
- 현지 대학입학시험 대비 교재 개발 예) 태국의 PAT(Professional and Academic Aptitude, 2018)



○ 현지 대학입학시험 대비 고재 개발 예) 태국의 PAT(Professional and Academic Aptitude, 2018)

```
※ 2022년 기준, PAT 어학 과목 시험(21,485명)에서
```

- 한국어 선택 학생 수(3,770명)는 중국어(7,470명) 다음으로 많았음.
- 중국어 34.77%(7,470명 > 한국어 17.55%(3,770명) > 일본어 17.09%(3,672명) > 프랑스어 14.70%(3,158명) > 팔리어 10.99%(2,363명) > 독일어 3.97%(852명) > 아랍어 0.93%(200명)



- 한류 열풍 기반 한국 문화 수업용 교재 개발
-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,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, 한국과의 교류 관계 및 정도, 상호문화주의
- ullet 대학 교육에서 한국학 교육 V_S 한국언어문화 교육 $_{-}$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한국학과 한국언어문화 교육 접목 예) 문학 교재
- 교사용 지도서 개발
- 교사 변인, 특히 현지인 교사를 고려한 교재 필요
- 한국인/현지인, 한국언어문화에 대한 전문성, 한국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성



4. 교원 양성 및 재교육

- 교원 수급
- 세계화 시대: 국내 교원 파견 → 현지화 시대: 현지 교원 양성
 예) 세종학당 교원 연수 확대 및 강화
- 국내 교원 파견
- 세종학당재단(문화체육관광부), 국립국제교육원(교육부), 한국국제교류재단/ 한국국제협력단(외교부)
- 예)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<해외 현지 초 중등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> 예)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<객원교수 파견 사업>
- 현지 교원 양성 시 교사의 전문성 및 교육의 질 문제(정명숙, 2022)
- 파견 전 사전 교육: 현지 적응 교육(현지 언어 및 문화, 생활 및 교육 환<mark>경,</mark> 안전 등), 한국언어문화 교육 역량 교육
- 파견 후 교육: 현지 수업에 대한 보고, 평가 및 피드백



4. 교원 양성 및 재교육

- $_{ extstyle }$ 대학 교육에서 한국학 교육 V_{S} 한국언어문화 교육 V_{S}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한국학과 한국언어문화 교육 접목 예) 문학 교재
- 교사용 지도서 개발
- 교사 변인, 특히 현지인 교사를 고려한 교재 필요
- 한국인/현지인, 한국언어문화에 대한 전문성, 한국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성



4. 교원 양성 및 재교육

- 한국어교원의 자격
-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기능 및 성격 변화
- 국내의 국립 기관(국립국어원) 중심
 - → 현지 교육기관 중심(한글학교, 현지 대학 등),
 - → 국내 사이버대학 연계 학사 학위 과정 운영
- 예) 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)의 한국어 3급 교원 양성기관 인가
- 예) 재외동포재단 학위취득과정 지원 사업: 한글학교-국내 사이버대학 (한국어학과) 연계 학사 학위 과정



5. 정책

국어기본법 [법률 제18761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19조(국어의 보급 등)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<u>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</u>에 따른 재외동포(이하 "재외동포"라 한다)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<개정 2019, 11, 26.>

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, 4, 14,]

제19조의2(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며 세종학당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미사장, 미사 및 감사를 두고, 임원의 정원,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<u>정관으로 정하</u>되.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혐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. 〈개정 2013 3, 23 〉
-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,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
- 2.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(누리 세종학당) 개발·윤 영
- 3.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
- 4.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, 교육 및 파견 지원
- 5.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
- 6.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 성하며 운영할 수 있다.
-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,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®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③ 법인·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며 금전,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.
-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<u>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</u>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<u>「민법」</u>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2, 5, 23,]



5. 정책

→ 국어기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207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제8조(분과위원회) [D <u>법 제13조제5항</u>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먼머정책분과위원회
- 가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나,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다. 국머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
- 라.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
- 마,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2. 머문규범분과위원회
- 가,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
- 나, 표준머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
- 다. 외래머 및 외국머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
- 라,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
- 마, 한자의 자형(字形) · 독음(讀音) 및 의미에 관한 사항
- 바, 머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
- 3. 국머순화분과위원회
- 가. 국머순화에 관한 사항
- 나,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국머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2개 미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
-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전문개정 2012, 8, 22,]

제13조(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) ① <u>법 제19조제2항</u>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(이하 "한국어교원"이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, 3, 23, 2015, 11, 30,>

-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,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
- 2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
- 3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
- 4. <u>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1조</u>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 리단체
- 5. <u>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55조</u>에 따른 문화원 및 <u>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8</u> 조에 따른 한국교육원
- 6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<u>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</u>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<mark>교시하는</mark> 기관 등



5. 정책

- 국외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
- 세계화 시대
- 보면성. 제국주의적 접근. 동화주의적 관점, 보급 및 확산
- 하양식(Top-down): 정부 기관 주도, 보급 및 확산 지양
- 예) '세종학당 브랜드 통합' (2016) : 국외에 한국어, 한국문화를 알리고 보급. 세종학당(문체부) 한국교육원(교육부) 한글학교(외교부)
- 현지화 시대
- 다양성/특수성. 공존주의적 접근. 상대주의적 관점. 상호소통 및 협력, 연지와의 소통 및 이해 기반.
- 상향식(Bottom-up): 현지 교육 현장 중심, 교류 지향 예) 교육부 <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>(2021)
 - : 연지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(학교, 학생, 교사, 교육행정가 지원)

에계 World Convention of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한마당

참고문언

- . 강소의 $(2022)_{\rm p}$ 태국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, 제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,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, 306-319.
- \cdot 권용해(2021), 현지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항목 연구, 반교어문연구 58, 반교어문학회, 355-387
- . 김성주 $(2005)_{\rm p}$ 범용 한국어 교재와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, 한국언어문화학 2-2,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, 1-17.
- . 김은경, 정호선, 유승원(2022), 해외 초·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, 제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,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, 67-76.
- . 민현식(2005), 한국어 세계화의 과제, 한국언어문화학 2 2,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, 89 138.
- . 성혜진(2019), 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종학당 정책집행의 효율화 방안 연구, 한국언어문화학 16-1,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, 213-240.
- . 이미양, 유은미(2022), 국외 중등교육기관 한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 변인 연구, 제 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,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, 28-39.
- . 이선이 $(2009)_{,}$ 해외 한국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 방안, 언어와 문화,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, 51-73.
- . 정명숙 (2022)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파견 한국어교원의 역할, 제33차 춘계국제학술 대회 발표자료집,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, 14-26.

감사합니다.

오지혜

irene927@hanmail.net